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 정 : 2009년 4월 25일
개 정 : 2022년 6월 10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나UBS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및 동법의 하위규정(이하 “관련법규”라 한다)과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다.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바.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재산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성과보수의 제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매보수 및 수수료는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수수료 부과절차) ①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방법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에 의거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비율, 금액에 대해 정하며, 내부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경우에는 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③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회사는 각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인상) ①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설명의무)제1항 및 법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밖의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9.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06.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